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25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백승아 · 이훈기 · 이수진
이용우 · 김문수 · 강경숙
김준혁 · 박지원 · 문금주
문정복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유아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9(유치원 민원의 처리)</u> <u>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u> <u>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u> <u>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u> <u>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u> <u>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u>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② (생 략) <u><신 설></u>	<u>방안</u>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유아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